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폐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7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72호

###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폐지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